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약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를 「농약관리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으로 명확히 함.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정(안 제6조제1항)

농민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에서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함.

다.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29조, 별표 7)

용도의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농어민등으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별표 5 및 별표 6)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절감 및 안전조업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용 배추망·양배추망, 어선용 구멍뿔목·구멍정·구멍부환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농약관리법」 제8조”를 “「농약관리법」 제8조 또는 제17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중 “무인헬리콥터”를 “무인항공기”로 한다.

제10조제1항의 계산식 중 “25/100,000”을 “22/100,000”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을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을 “내수면어업용 또는 내수면양식어업용 선박 및 육상수조식내수양식어업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내수면어업용 선박”을 “내수면어업용 또는 내수면양식어업용 선박”으로, “내수면어업에”를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육상등 내수양식어업에”로,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을 “육상수조식내수양식어업용 시설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양식어업에”를 “육상등 내수양식어업에”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나목 중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을

“내수면어업용 또는 내수면양식업용 선박 및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내수면어업용 선박”을 “내수면어업용 또는 내수면양식업용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을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업용”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을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용”으로 한다.

제22조 중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어업용”을 “내수면어업용 또는 내수면양식업용 선박 및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용”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제41호 중 “스프링쿨러”를 “스프링클러”로 한다.

별표 5에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배추망·양배추망

별표 6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구멍 부기·동의·뗏목·정·부환(어선용에 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6조의2제2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경우 가. 판매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법 제106 조의2제2 1항	판매가액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판매가액의 100분의 200 에 해당하는 금액	판매가액의 100분의 300 에 해당하는 금액

나. 판매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판 매 가 액 에 서 5천만원 을 뺀 금액	판 매 가 액 의 100분의 200 에 해당하는 금액	판 매 가 액 의 100분의 300 에 해당하는 금액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 · 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생략)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 · 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 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②----- ----- --- 「농약관리법」 제8조 또 는 제17조----- -----.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 민 등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 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 민 등의 범위)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	1의2.----- ----- -----

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
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
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의3.·2. (생 략)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정)

①법 제105조의2제5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
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
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
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정세액의 고지일까지
의 기간(일) × 25/100,000

② (생 략)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
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06조의
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
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
-- 무인항공기-----
-----.

1의3.·2.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정)

①-----

-----.

----- 22/100,000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
석유류의 범위) ①-----

-----.

1. -----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나. (생략)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라.·마. (생략)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

라.·마. (현행과 같음)

2. -----

내수면어업용 또는 내수면양식어업용 선박 및 육상수조식내수양식어업용 -----

②----- 내수면어업용 또는 내수면양식어업용 선박-----
--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

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
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
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
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수산
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
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
면에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
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
다.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
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
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업발전법」에 의한 육상등 내수
양식업에 -----
-----, ----- 육
상수조식내수양식업용 시설은
「양식산업발전법」----- 육
상등 내수양식업에 -----

----- 양식업 -----

-----.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

-----.

1. -----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
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
드”라 한다)

가. (생략)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조합에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
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생략)

2. (생략)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
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1. 2. (생략)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
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
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③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 내수면어업용
또는 내수면양식업용 선박
및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용 시설-----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
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 내수면어업용 또는 내수면
양식업용 선박-----

②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 ~ ⑦ (생략)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

④-----

-----.

1. -----
-----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

2. -----
----- 육상수조식내수양식어업용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

---내수면어업용 또는 내수면양식어업용 선박 및 육상수조식내수양식어업용 -----

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 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u><신 설></u>	----- ----- ----- ----- ----- ----- ----- -----. <u>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